

# 定 款

忠清北道貨物自動車運送事業協會

# 定 款

西紀 1957年	9月 28日	制定
西紀 1959年	1月 28日	改正
西紀 1961年	1月 30日	改正
西紀 1962年	1月 23日	改正
西紀 1964年	1月 31日	改正
西紀 1965年	1月 26日	改正
西紀 1966年	2月 1日	改正
西紀 1972年	2月 10日	改正
西紀 1972年	10月 31日	改正
西紀 1973年	11月 21日	改正
西紀 1977年	12月 28日	改正
西紀 1978年	7月 11日	改正
西紀 1980年	1月 9日	改正
西紀 1980年	12月 2日	改正
西紀 1983年	5月 6日	改正
西紀 1984年	2月 27日	改正
西紀 1985年	12月 23日	改正
西紀 1986年	3月 10日	改正
西紀 1988年	2月 17日	改正
西紀 1988年	12月 13日	改正
西紀 1989年	5月 27日	改正
西紀 1991年	2月 18日	改正
西紀 1993年	2月 27日	改正
西紀 1998年	5月 21日	改正
西紀 2000年	9月 30日	改正
西紀 2002年	4月 11日	改正
西紀 2003年	4月 3日	改正
西紀 2015年	3月 20日	改正
西紀 2023年	2月 23日	改正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협회는 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국책 수행에 협력하고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총역량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이를 위한 사업을 행하고 회원의 상호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1. 본 협회는 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

2. 본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에 의거한 법인으로 한다.

**제3조(지역)** 본 협회의 관할 지역은 충청북도 일원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1. 본 협회의 사무소는 청주시에 둔다.

2. 필요시 각 시군에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본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와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사업
3. 운송사업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령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회원 복지를 위한 상조회 운영
8. 관계법령에서 정한 화물공제사업
9. 회원 상호 간의 연락사무소, 정화위원회, 운영위원회, 친목회, 상조회 등 각종 자생 및 방계조직의 운영에 대한 지도 관리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

**제6조(관리규정)** 본 협회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 급여, 내부 위임전결, 예산, 회계, 문서, 선거관리, 화물가족상조회칙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이사회 의결로 제·개정 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본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관련

법령에서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와 관련한 회원의 사업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본 협회는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의 이전(주사무소의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등 위탁업무 처리 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에게 위탁업무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 2 장 회 원

**제9조(자격)** ① 본 협회는 법 제3조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충청북도에 주사무소, 지점, 영업소를 설치하고 충북에 차량을 등록하고 협회에 가입금을 납부한 운송사업자를 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에게 사업 허가의 취소, 폐업, 주사무소, 영업소, 지점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대의원)** ① 회원 중 차량허가 대수가 15대 이상인 운송사업자를 대의원으로 하며, 총회에 참석 할 수 있다. 단, 타 시·도에 본사를 둔 도내 지점 및 영업소 대표도 자격을 가지며, 이 경우 1개 지점 및 1개 영업소에 한 한다.

②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 대표직에 있을 경우는 1인으로 간주한다.

### **제11조(권리, 의무)**

①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아래의 권리를 갖는다.

단, 1, 2호는 대의원만이 행할 수 있다.

1. 총회 의결권
2. 임원 선거권
3. 본 회원에 할당된 물자의 수배
4. 본 협회 서류 열람
5. 본 협회 공동시설 이용

②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
2. 본 협회의 조회 또는 질문에 대한 회답

3. 사업 자금의 출자
4. 협회비 납부 및 부과금의 부담
5. 행정 지시 사항의 성실히 이행

**제12조(가입금 및 회비)** ① 본 협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아래의 가입금 및 회비를 회원에게 고지하고, 회원은 다음과 같이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1. 가입금은 최초 회원 가입 시 회원사의 차량 허가 대수에 따라 비례 고지하고 납부한다.
  2. 일반회비는 회원사에 매월 차량별 허가대수에 대한 기준대수를 정하여 비례 고지 및 납부한다. 단, 업체 할은 기준대수에 따라 차등하여 고지하고 납부한다. 또한 연합회비는 전국화물연합회 총회에서 의결한 연합회비를 일반회비에 합산 고지하고 납부한다.
  3. 특별회비는 협회의 정관 제5조(사업)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의결로서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의결된 금액을 고지하고 납부한다.
- ② 협회는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회비를 고지하며, 회원은 당월 25일 한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③ 납부한 가입금 및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3조(회원에 대한 제재)** ① 회원은 각종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원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벌칙) 및 제70조(과태료) 규정을 위반 시 협회는 관할 시·군청에 행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는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다.
1. 회비 6개월 이상, 특별회비 중 증차분 6대 이상 미납 시 자격 정지
  2. 회비 12개월 이상, 특별회비 중 증차분 12대 이상 미납 시 자격 상실

### 제 3 장 임 원

**제14조(임원)** ①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2명
3. 이사 19명 이내 (정·부이사장 포함)

4. 감사 2명
  5. 전무이사 1명  
(단,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
- ②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상근직 이사는 유급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자격)** ① 이사 및 감사는 회원사의 대표자(지점 및 영업소 대표자 포함)로서 공제조합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선출하고, 선출 결과를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공제조합자문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간을 허여하고, 기간 내에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 또는 감사에서 자동 퇴직한다.

**제16조(임기)** 협회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전무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선출)** ① 이사장 입·후보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고일부터 총회 15일 전까지 대의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사전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총회에서 대의원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대의원 과반수 참석에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득표수가 같을 경우 공히 주민등록상의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입·후보자가 한 사람일 경우는 가·부 투표 및 기타 절차를 생략하고 무 투표 당선으로 한다.
-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 선출은 총회 결의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신할 수 있다.
- ④ 이 정관에 정한 이외의 사항 및 세부 선거 관련 절차는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8조(고문)** 본 협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협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덕망 있는 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제19조(직무연속)** 본 협회의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고문은 회원의 협회 업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②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 일체를 총괄하며 각 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부이사장 중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단,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시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부이사장 중 연장자가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

- ④ 이사장 및 부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상근직 이사(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각급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 ⑥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 발언 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 ⑦ 감사는 감사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제 4 장 회 의

**제21조(종류 및 소집)** 본 협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말 60일 이내 이를 소집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이사회 결의로 필요시 서면 총회도 가능하다.
- ② 임시총회는 아래의 사항 발생 시 이사장은 일주일 이내에 소집하며, 미 소집 시 부이사장 중 1인이 소집하여야 한다.
  - 1.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 발생 시
  - 2. 전체 대의원 2/5 이상이 소집 이유를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제25조 ①항 외 협회 운영 관련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할 때
- ③ 이사회는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하며, 재적 이사 1/2 이상이 소집 요구 시 이사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구성 및 의결)** ① 총회는 제10조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 및 이사회는 공히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단, 정관의 변경 및 해산은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23조(긴급사항)** ①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시급하여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 ② 전 ①항의 경우는 차기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대리권)** 위임인으로부터 총회 절차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은 이를 출석으로 간주하며,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이사장에게 의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선거권은 제외하고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① 총회 참석 회원이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으로서 총회에 출석할 시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 1. 임원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감사, 지배인으로 한정한다.
  - 2. 직원의 경우 : 총회 직전연도 12월 31일 이전 4대 보험 중 택 1 가입자에 한정한다.
- ② 그 밖의 지참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총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대의원은 회의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④ 이사회는 협회 등기이사 참석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참석하는 법인의 대표가 2인 이상 공동으로 있는 경우 그중 1인이 참석할 시 그 외 대표자의 위임이 없어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25조(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는 총회의 의결을 요하며, 제1호는 충청북도지사의 인가를 제2호와 제5호는 충청북도지사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 1. 정관의 제·개정 및 협회의 해산
  - 2. 사업계획 및 결산 재무제표 승인
  - 3. 회비 및 특별 부과금에 관한 사항
  - 4. 차입 및 상환
  - 5. 임원의 선출 및 선임
  - 6. 임원의 보수 한도
-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3. 예산의 변경 집행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 4.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 사항
  - 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요사항

**제26조(의사록)** 회의를 개최할 시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

장 및 출석 회원 2인 이상 연서 날인한다.

1. 개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총수 및 출석회원의 성명
3. 부의 사항
4. 의사의 요령
5. 결의사항 및 찬반의 수
6. 기타 사항

##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27조(자산)** 본 협회의 자산은 다음 사항으로서 조성한다.

1. 본 협회에 속한 동산, 부동산, 기타 지적 재산권 일체
2. 부과금 및 협회비
3. 회원의 출자금
4. 보조 또는 기부에 의해 취득한 재산
5. 본 협회 사업 및 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
6. 사용료
7. 기타 수입

**제28조(사업년도)** 본 협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29조(서류비치)** ① 협회는 정관과 총회의 의사록 및 회원명부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본 회원은 전항의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결산)** 협회는 늦어도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협회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사업 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사업결과 보고 및 결산승인)** 이사장은 정기총회에 협회의 사업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하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감사가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 장 해 산

제32조(해산 과 청산) 본 협회는 총회 결의로써 해산하고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장으로 한다.

### 부 칙

1. 정관에 규정된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2. ① 본 정관은 195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 개정 이전에 전 정관에 의하여 행한 제반 행위는 이 정관 시행 후에도 유효하다.  
③ (경과조치)
  - 가. 2002.4.11. 개정 당시 제18조(선거) [임원 5인 이상 추천] 규정은 제·개정 시부터 시행 및 18조(선거) 규정은 2015.3.20. 개정 이후 17조(임원선출) [임원 10인 이상 추천] 규정으로 변경
  - 나. 2002.4.11. 개정 당시 제14조(구성) [임원 구성 고문 포함] 규정은 2002년 정기총회 이후부터 시행(제19대 임원 임기와 동일) 및 2015.3.20. 개정 이후 제14조(임원) [임원 구성 고문 삭제] 규정으로 변경 및 제18조(고문) 규정 별도 신설
  - 다. 2015.3.20. 개정 당시 제16조(임기) [이사장 연임] 규정은 제24대 임원 임기부터 시행